

남북한 교역 확대를 위한 전자상거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Commer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이충배(Choong-Bae Lee)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정재우(Jae-Woo Jung)

중앙대학교 BK계약교수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 론 |
| II. 남북한 전자상거래 도입에 관한 일반적 고찰 | 참고문헌 |
| III. 남북한 전자상거래 도입관련적·제도적 문제점 | Abstract |
| IV. 남북한 전자상거래 도입관련 법적·제도적 추진 방안 | |

Abstract

Since July 7 mutual declaration in 1988 which is a landmark for South-North Korean relations, Inter-Korean Trade has been set out. During the period, the Inter-Korean Trade has been ups and downs depending on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economic situation of both countries. South Korea became one of the major three trading countries of North Korea's trading partners in 2000, when the sum of annual trade volume reached the record 425million US dollars.

A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are developing national policies and strategies to promote the digital economy, recognizing the potential benefits of e-business as an engine of growth and development. However, the trade structure of South-North Korea remains very simple in terms of its contents. Furthermore trade procedure many limitations especially electronic commerce in North Korea has many obstacles to working properly.

The information in Inter-Korean trade cannot be shared in common. South Korean firms have suffered repeatedly trial and error and excessive competition took place among South Korean firms. Institutional inertia related to mutual trade, political and military Impacts on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abnormal industrial structure of North Korea and insufficiency of SOC could be mentioned as major problems in Inter-Korean trade as well. Several measures should be taken in order to cope with those problems. First of all,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to business firms about North Korean economy and business environments. It is suggested that forums related to inter-Korean trade hold in regular bas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establish the system of business information sharing.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to respond to the realistic needs of inter-Korean trade. That is, detailed measures should be taken to guarantee investment in electronic commerce. Third, it is desirable to start with the mutual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ey Words : Inter-Korean Trade, electronic commerce

I. 서 론

한 국가의 정보화 수준을 나타낸 정보화 지수(ISI : Information Society Index)를 비교해 볼 때 현재 남한의 정보화는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초고속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인프라 구축은 가장 선진적인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휴대폰과 인터넷 등 최첨단 정보기술의 상용화는 남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새로운 변화를 표출하고 있다.

남한에서 표면화된 정보화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 정보공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off-line) 영역과 연계되면서 전통적인 상거래와는 차별화된 전혀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권역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남한의 정보화 모습과는 달리 북한은 세계적인 추세인 개방화 정보화 질서에서 벗어난 고립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2000년 이후 IT산업을 통한 새로운 경제발전을 역설하면서 1990년대의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보관련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5월 북경 중관촌(北京 中關村), 2001년 1월 상해 푸둥 지구 등 2차례에 걸쳐 중국 정보기술 연구 단지를 방문하여 정보화 사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 사실은 현재 북한이 첨단 기술 분야에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북한이 영원히 후진국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강박감과 또한 그 같은 소외가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북한은 정보기술 산업 가운데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IT산업에 주력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이동통신, 하드웨어, 인터넷 등으로 관심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남북한 경제구조와 부존자원의 차이로 인해 남북교역을 통한 잠재적 남북한 경제성장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현재 남북교역 규모는 연간 7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거래액의 비중이 북한에게는 전체 교역 규모 22억 달러의 30%를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남한의 무역규모인 5,000여 억 달러에는 1%미만이다. 앞으로 중국제품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급속히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국내 제조업은 빠른 속도로 사양 산업화되는 현실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편 국가간 경제협력은 통상적으로 경제성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남북한 경제협력에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의 경험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은 국제적 흐름과 보조를 맞추어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책 중에는 세계 각 국가가 주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도입은 제품의 생산 및 소비, 유통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남북한 경제 성장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남북한 전자상거래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한간에 전자상거래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남북한 교역 현황과 전자상

거래 추진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전자상거래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이 특수한 관계임을 인식하여 정치적·정책적 접근법보다는 경제적 접근법에 입각해 남북한 전자상거래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남북한 전자상거래 도입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남북한 경제협력의 개요

1) 남북교역의 현황

남북한간 물자교역은 1988년 10월 7·7선언¹⁾ 이후 정부가 대(對)북한 경제개방 압력을 취한 이후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1989년 남북한 교역액은 1,872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0년 8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과 1992년에는 1억 7,343만 달러를 상회하는 규모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위탁가공교역도 추진되었다. 1996년에는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인해 1998년에도 IMF상황에서 내수경기 위축에 따른 교역여건의 악화로 남북교역이 다소 감소하였다. 1999년에는 비료 등 대북 지원 증가와 금강산관광사업 등 경제협력 추진에 따른 물자반출의 급증으로 3억 3,344만 달러 까지 증가하였다.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자료인 ‘2005년 1월~6월중 남북교역 동향’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 중 남북교역은 전년 동기대비 39.5% 증가한 4억 5412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3년에는 국민의 정부 이래 추진되어온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었다. 철도 연결, 개성공단 착공식, 육로와 해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사업 정례화 등 이외에도 남북이 그동안 제3국 중개인을 통해 이뤄지던 간접교역을 ‘직거래방식’으로 대폭 확대하는 합의를 이끌어냈고 2000년 남북 당국간에 서명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경제협력 4개 합의서를 발표시켜 남북 기업이 상대지역에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남북 교역은 북한이 남북한 물자교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해외 중간상을 통한 간접교역 형식으로 추진되었으나 2000년 이후 농산물 및 위탁가공교역의 일부품목에 대해 북한 당사자와 직접 협의하고 계약하는 직접교역 방식도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과 2004년에는 반출이 반입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간 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지원에 의한 것이다.

1) 7·7선언의 6개항은 다음과 같다. ① 남북 동포간의 상호 교류 ② 이산가족들간의 상호 방문 적극 주선 ③ 남북간 교역을 민족 거래로 간주하고 남북 교역 문호 개방 ④ 비군사적 물자에 대한 우리 우방들의 교역 반대 ⑤ 남북한 소모적인 경쟁 지양 ⑥ 북한과 마일 관계 개선 협조

〈표 2-1〉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 (단위 : 미화\$천)

| 연도 | 반 입 | | | 반 출 | | | 합 계 | | |
|------|-------|-----|---------|-------|-----|---------|--------|-----|---------|
| | 건수 | 품목수 | 금액 | 건수 | 품목수 | 금액 | 건수 | 품목수 | 금액 |
| 1994 | 827 | 73 | 176,298 | 495 | 92 | 18,249 | 1,322 | 159 | 194,547 |
| 1995 | 1,124 | 105 | 222,855 | 2,720 | 174 | 64,436 | 3,844 | 265 | 287,291 |
| 1996 | 1,648 | 122 | 182,400 | 2,980 | 171 | 69,639 | 4,628 | 280 | 252,039 |
| 1997 | 1,806 | 140 | 193,069 | 2,185 | 274 | 115,270 | 3,991 | 385 | 308,339 |
| 1998 | 1,963 | 136 | 92,264 | 2,847 | 380 | 129,679 | 4,810 | 486 | 221,943 |
| 1999 | 3,089 | 172 | 121,604 | 3,421 | 398 | 211,832 | 6,510 | 525 | 333,437 |
| 2000 | 3,952 | 203 | 152,373 | 3,442 | 505 | 272,775 | 7,394 | 647 | 425,148 |
| 2001 | 4,720 | 197 | 176,170 | 3,034 | 468 | 226,787 | 7,754 | 603 | 402,957 |
| 2002 | 5,023 | 204 | 271,575 | 3,773 | 495 | 370,155 | 8,796 | 572 | 642,730 |
| 2003 | 6,356 | 186 | 289,252 | 4,853 | 530 | 434,965 | 11,209 | 588 | 724,217 |
| 2004 | 5,940 | 202 | 258,039 | 6,953 | 575 | 439,001 | 12,893 | 634 | 697,040 |

자료 :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의 내용과 통일부 홈페이지 검색을 토대로 연구자에 의해 재작성된 자료임.

주 : 1995년 교역금액에는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이 제외되어 있음.

2) 북한의 정보통신 부문별 실태분석과 남북 IT경협 현황

(1) 북한의 정보통신 부문별 실태분석

①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부문

북한의 전체적인 하드웨어 수준은 선진기술의 도입 부진으로 기술력이 크게 낙후된 상태이다. 현재 북한은 컴퓨터를 조립 생산하고 있기는 하지만 컴퓨터 보급률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의 개인용 컴퓨터는 아직 286·386·486급이 많으며, 펜티엄급 개인용 컴퓨터는 핵심기관·연구소·일부 대학에 주로 보급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산 공정 자동화와 인터넷 활용시대를 대비해 각 공장 및 기업에도 컴퓨터 보급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²⁾ 즉, 하드웨어 산업을 포함한 북한의 전반적인 북한의 정보통신(IT) 산업은 남한에 비해 기술과 자본, 정보통신 인프라 등이 미비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현실은 근본적으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과거의 대(對)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와 이를 대체한 바세나르 협약으로 인해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관련 첨단장비와 기술의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기인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난도 컴퓨터 보급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³⁾

2) 강인수, “북한 정보통신 동향과 남북 협력 현황”, 「정보통신정책」, 2004. 10, p.11.

3) 바세나르 협약은 1949년부터 대공산권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지탱해 온 서방 선진국의 COCOM을 대신하는 새로운 협

하드웨어 분야와는 달리 소프트웨어 분야는 소기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군사안보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수준은 상당하다. 이 분야를 주도하는 기관은 미림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평양정보센터와 조선컴퓨터 센터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⁴⁾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은 김일성대학의 컴퓨터 단과대학⁵⁾, 김책공대⁶⁾, 함흥 전자계산기 단과대학 등이 있으며 이들 대학에서 개발해내는 소프트웨어의 수준도 높다.⁷⁾

북한이 소프트웨어 기술발전에 주력해온 이유는 첫째, 북한의 과학기술은 기초과학을 중시해온 토대 위에서 형성되었으므로 소프트웨어 분야로의 진출이 용이했다. 둘째, 남한과의 경쟁을 생각해 볼 때 남한이 하드웨어 산업분야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의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⁸⁾

② 통신 인프라부문

북한의 통신 인프라 현황은 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낙후된 상태이다. 이와 같은 통신 인프라 구축 미비의 주된 원인은 북한내부 정보통신의 활성화가 체제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정치적인 면이 주된 이유라 할 수 있다. 남북한 통신시설의 현황을 <표 2-2>를 살펴보면 북한의 열악한 통신환경을 알 수 있다.⁹⁾ 남과 북의 통신현황을 비교했을 때 남한이 차지하는 비율을 100%로 설정했을 경우 북한이 점유하고 비율은 개별 평가항목에서 5%도 되지 않는다.

<표 2-2> 남북한 통신시설 현황 비교

| 구 분 | 단 위 | 북한 (A) | 남한 (B) | (A)/(B) |
|----------|-----|--------|---------|---------|
| 가입전화시설 수 | 천회선 | 1,307 | 24,382 | 0.05 |
| 전화가입자수 | 천회선 | 1,100 | 21,569 | 0.05 |
| 100인당보급률 | 대 | 5.2 | 44.1 | 0.12 |
| 공중전화시설 수 | 회선 | 2,720 | 538,983 | 0.005 |

약으로 공산권체제가 와해되면서 새로운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규범을 만들 필요성이 절실해짐에 따라 1996년 4월 네덜란드 바세나르에서 출범되었다. COCOM이 통제 대상국가를 「공산권 국가」로 지정한 것과는 달리 바세나르 협약은 「국제평화와 지역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국가」로 규정하였으며 이 협정에 의하면 486이상 컴퓨터 등은 대북 진출이 금지되어 있다.

- 4) 평양정보센터에서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항공교통지휘시스템인 ‘토성’은 레이더로부터 받은 신호에 기초하여 공중 목표물의 위치, 속도 등을 분석한 후 지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공중감시 및 지휘시스템이다.
- 5)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는 ‘안티바이러스 체계’, ‘조선글 입력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 6) 김책공대는 다국어 문서인식프로그램인 ‘신동2002’를 개발하였으며 이 소프트웨어는 조선어·중국어·러시아어·영어 등 5개 국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7)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1994년 제네바국제발명 및 신기술 전시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지문호출조정체계가 있다.
- 8) 정양현, “인터넷과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인터넷 시대의 민족통합」, 한림대 민족통합 연구소 창립 2주년 연례 학술대회, 2000.11.24, pp.8 ~ 20.
- 9) 북한의 통신시설은 북한의 고립정책으로 인하여 북한 내부의 사정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대표적인 국제기관인 국제전기통신 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해마다 국가별 통신 현황을 제공하고 있지만 북한에 관한 그 수치가 정확하지가 않으며, 국내 학자들의 현황조사도 정확성이 떨어지며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구 분 | 단 위 | 북한 (A) | 남한 (B) | (A)/(B) |
|---------------|-----|--------|------------|---------|
| 100인당 공중전화보급률 | 대 | 0.13 | 8.7 | 0.0015 |
| 이동전화가입자수 | 회선 | 500 | 26,826,000 | 0.00002 |
| 국제전화회선 수 | 회선 | 120 | 12,051 | 0.01 |
| 교환기 디지털화률 | % | 4.7 | 61.8 | 0.07 |
| 종사원 수 | 명 | 15,000 | 60,100 | 0.25 |

자료 1) 북한 : ITU,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2003) 2) 남한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국 (www.mic.go.kr)

3) 배성인, “정보화시대 북한의 정보통신 산업과 남북한 교류협력”, 「통일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통일연구원, 2001, p.314.

③ 인터넷 부문

인터넷은 북한의 체제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외부와 거의 차단된 상태이지만 내부적으로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북한 내에서 외부 인터넷에의 접속은 특정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인터넷 서버에 접속함으로써 가능하지만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외부에서 북한으로 인터넷 접속은 아예 차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북한 내부 인트라넷(Intranet)에는 현재 50여 개 이상의 기관이 개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접속하고 있으며 상호 정보교환을 위해 전자우편도 주고받고 있다. 중앙과학기술 통보사는 과학기술자료 검색체계인 ‘광명’을 통해 3,000만 건 이상의 자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가 100만을 초과할 정도로 이용도가 높다.¹⁰⁾ 2002년 5월에 개설한 평양 PC방은 20여 평 규모로 10대의 PC를 설치하여 아무런 제약 없이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고 e-mail 교환도 가능하다. 그러나 시간당 이용요금이 10달러로 매우 높아서 실제로는 외국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형편이다.

북한은 인터넷을 체제유지에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즉, 인트라넷과 방화벽(firewall)에 관한 연구가 완성 단계에 있으며 제한적이기는 하나 해외에 있는 사람이 북한에 있는 사람과 전자우편을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제통신연합의 웹 사이트에 북한(kp)으로 등록된 공식적인 주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¹⁾ 다만 북한이 해외에 여러 개의 웹 사이트를 설치하여 북한의 공식 내지 비공식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 전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를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10) 강인수, 전계서 2004. 10, pp.24 ~ 30.

11) 김상택·공영일, “북한의 정보화와 남북 통신연합”, 「인터넷과 북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0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인터넷 검색 결과 북한의 공식적인 국가 도메인명은 kp이지만 전 세계 인터넷 번호와 주소를 총괄하는 미국 소재(IANA : Internet Address Numbers Authority)로부터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이 북한에 없어 사실상 kp도메인을 이용한 인터넷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

〈표 2-3〉 북한이 해외에 설치한 웹 사이트 일부

| 이름 | 내용 | |
|--------|--|---|
| 조선중앙통신 | ◦URL : www.kcna.co.jp ◦언어 : 한국어와 영어 | ◦주소 : Tokyo, Japan ◦개설 : 1997년 1월 10일 |
| 조선인포뱅크 | ◦URL : www.dprkorea.com ◦언어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 ◦주소 : Beijing, China ◦개설 : 1999년 10월 13일 |
| 평양타임즈 | ◦URL : www.times.dprkorea.com ◦언어 : 영어 | ◦주소 : Beijing, China ◦개설 : 2000년 7월 8일 |
| 조선신보 | ◦URL : www.korea-np.co.jp ◦언어 : 한국어, 영어, 일본어 | ◦주소 : Japan ◦개설 : 1997년 2월 14일 |
| 실리는행 | ◦URL : www.silibank.com ◦언어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 ◦개설 : 2001년 9월 12일 |

자료 : 박찬모, “남북 정보통신(IT)산업 협력의 현황과 과제”, 미래전략연구원, 2002. 8, pp.6~10.

KOTRA 취리히 무역관이 동(同)지역에서 발행되는 독일어로 작성된 신문인 ‘20 Minuten’ 보도에 따르면 2003년 2월 북한이 천리마그룹(chollimagroup.com)이라고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였으며 이 웹 사이트는 북한의 각종 민속·문화제품과 관광여행상품을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기업이 북한과 합작 투자하여 북한에서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¹²⁾ 북한에서는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주관하는 컴퓨터 망을 통해 〈표 2-4〉 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2-4〉 북한 인터넷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내용 |
|---|
| ㉠ 과학기술자료 검색체계(광명)를 통한 과학기술자료(데이터베이스)서비스 |
| ㉡ 전자우편체계(혜성)를 통한 과학기술 자료검색 주문 및 번역봉사, 서신거래 서비스 |
| ㉢ File 전송체계를 통한 File 서비스 |
| ㉣ 현대과학 기술용어 20만개가 수록되어 있는 7개 국어(조선어,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사전 열람 서비스 |
| ㉤ 전자소식체계(별무리)를 통한 전자소식 서비스 |

2002년 6월에는 북한이 남한의 당국자와 통신 사업자를 초청하여 사상 첫 남북통신회담을 가졌으며 앞으로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방식의 휴대폰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

12) (주)훈빛은 북한의 장생무역총회사와 합작으로 ‘조선복권 합병회사’를 설립하여 인터넷 복권사이트를 개설한 바 있다.

다.¹³⁾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보의 완전 자유교환은 어렵겠지만 필요하고 가능한 부분부터 정보를 상호 개방하고 공유해 나가야 하며 그 폭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¹⁴⁾

(2) 남북 정보통신(IT) 경제협력 현황

남북 정보통신(IT)교류는 1998년 금강산 관광 등 남북 화해 무드를 타고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3년 3월 삼성전자와 북한컴퓨터센터(KCC)의 통일 워드 공동개발이 시초였으며 하나로 통신과 삼천리총회사의 3차원 애니메이션 공동 협력, 포항공대와 평양정보센터(PIC)의 가상현실분야 공동연구 등이 대표적인 남북 정보통신(IT)분야의 교류로 평가받고 있다. 이 밖에도 모니터 생산업체인 IMRI도 평양 공장에서 PC모니터를 생산·수출을 시도한 적이 있다.

현재 정보통신(IT) 분야의 경제협력의 형태는 크게 소프트웨어 개발 반입, 하드웨어 임가공, 소프트웨어 임가공, 정보통신(IT)단지 설립 사업, 정보통신(IT)벤처 기업 방북활동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중소규모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이루어지고 있다.¹⁵⁾

① 소프트웨어 개발 반입

삼전사는 2000년 북한의 조선컴퓨터 센터와 남북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311만 6천 달러를 북한에 투자했으며 모니터 생산업체인 IMRI의 자회사인 유니코텍도 일본 조총련계 회사인 조선은행시스템(CSG)과 합작으로 북한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다국어 번역 프로그램인 ‘스라스타’ 시리즈를 개발해 일본시장에 판매한 적이 있다. 하지만 북측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제품이 우수하고 독창적이긴 하지만 시장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소프트웨어 판매가 수익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최근 2005년 5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개발업체인 (주)뉴테크 웨이브가 주력 제품인 ‘바이러스 체이스’를 조선컴퓨터센터를 통해 북한에 무상공급 하였다.¹⁶⁾

② 하드웨어 임가공

하드웨어 장비 임가공 업체로서는 모니터 PCB(인쇄회로기판) 임가공을 하는 IMRI가 있었으며 이 업체는 2000년에 140만 달러 규모의 임가공 반입 실적을 올렸다. 그 당시 IMRI는 사업실적에 따라 북측에 이익을 배분하는 독특한 계약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었으며 북한도 상대적으로 판매실적에 따른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13) 박찬모, “남북 정보통신(IT)산업 협력의 현황과 과제”, 미래전략연구원, 2002. 8, pp.6 ~ 12.

14) 임을출, “북한의 인터넷 사업”, 「통일경제」, 통권 제65호, 현대경제연구소, 2000. 5, pp.26 ~ 32.

15) 배성인, “정보화시대 북한의 정보통신 산업과 남북한 교류협력”, 「통일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통일연구원, 2001, p.314.

16) 양문수, “북한의 ‘비약형’ 경제개발 전략과 남북 IT협력 전망”, 「LG주간경제」, 제615호, LG경제연구원, 2001, p.12.

③ 소프트웨어 임가공

대(對)북 구두임가공 업체인 엘칸도의 자회사인 엘사이버와 북한의 광명성총회사와 3D 애니메이션 및 소프트웨어 임가공에 대한 합의를 체결하였으며 평양 대동강에 있는 민족 경제인 연합부 내부에 있는 엘사이버 평양 소프트웨어 교육센터를 설립했다. 이를 계기로 북한 기술진은 동영상 제작 임가공 으로부터 주문 프로그램 개발 및 자체 프로그램 개발 판매를 위해 한국의 기술진에게 일정기간 연수를 받게 되었다. 이 소프트웨어 임가공 분야는 최근 북한에서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분야이며 3D 콘텐츠 제작은 수준 있는 인력의 장시간 작업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남측 기업들의 유망한 경제협력 추진 사업 품목으로 선정되었다.

④ 정보통신(IT) 단지 설립 사업

북한의 IT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남한의 전문가가 교육시키고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IT 단지 조성 사업도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하나비즈닷컴은 평양정보센터와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200만 달러를 투자했다.

⑤ 정보통신(IT) 벤처 기업 방북활동

하나비즈닷컴의 방북사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정보통신(IT) 벤처기업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남북한 경제협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가운데 기가링크와 우암닷컴은 평양정보센터 내에 초고속망 구축 및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기가링크는 자체 개발한 새로운 통신 장비인 T-Lan장비를 통해 바세나르 협약 규제와 미상무성규제를 뛰어넘어 반출승인을 받았다.¹⁷⁾ 기가링크는 신(新)기술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 있으며 향후 북한의 통신망 구축사업을 확대시킬 계획도 있다.¹⁸⁾

2. 남북한 전자상거래 협력의 필요성

1) 전자상거래의 북한 경제 기여 가능성

전 세계적으로 정보기술은 세계경제 구조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있다. 후발 개발도상국이면서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 하나인 북한도 최근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정보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선진 정보기술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고 있다.

17) 미국이 원천기술을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국가(북한, 쿠바, 리비아)들에 수출을 금지하는 규제, 이 규제에 따르면 미국 제품이 대부분인 각종 컴퓨터 핵심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는 공식적인 북한 반입이 일체 금지된다.

18) 기가링크가 구축하는 新장비는 구축비용이 포트 당 15만원으로 30~60만원에 이르는 기타 장비보다 절반이하로 저렴하다.

국내 정보기술(IT)산업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5.7% 성장하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3배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적 수치는 정보기술(IT)산업이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연평균 2.2% 기여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북한도 인정하고 있으며 북한도 그에 따라 정보기술(IT)도입에 상당히 적극적이다.

〈표 2-5〉 정보통신(IT)산업의 성장률 추이와 GDP 경제성장 기여도

| | 1996 ~ 1999 평균 | 2000 | 2001 | 2002 | 2003 |
|-------------|----------------|------|------|------|------|
| GDP성장률 | 4.0 | 9.3 | 3.1 | 6.3 | 2.7 |
| IT산업의 성장률 | 26.1 | 35.8 | 9.1 | 12.0 | 5.9 |
| 경제성장 기여도 | 2.1 | 4.4 | 1.4 | 1.9 | 1.0 |
| IT산업의 GDP비중 | 9.0 | 15.1 | 16.0 | 16.9 | 17.4 |

자료 : 한국은행(www.bok.or.kr)에서 발췌한 자료임

〈표 2-5〉는 정보통신(IT) 산업의 성장률, 경제성장 기여도, 정보통신(IT)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정보기술(IT)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은 먼저 정보기술(IT)에 대한 투자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즉, 정보기술(IT)에 대한 투자는 자본 투입량을 늘려 노동생산성 향상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노동생산성 향상은 곧 지속적인 수요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순환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 기업의 공급망 가치사슬에서 정보기술(IT)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관리비용뿐만 아니라 물류비용까지도 절감시킬 수 있다.

남한에서 정보기술(IT)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북한도 정보기술(IT)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정보기술(IT)산업의 생산성 증대는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며 또한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는 정보기술(IT)산업의 성장과 동시에 정보기술(IT)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전자상거래 도입은 경제성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먼저 통신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이 갖추어져야 하고 거래에 수반되는 전자 지불, 인증, 배송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는 동시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때 효과가 커지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이는 결국 산업 전반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새로운 부가가치창출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는 탐색비용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생산비용의 절감효과도 누릴 수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비효율적인 공급망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통해 비용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을 지닌 전자상거래가 북한에 신속히 도입되도록 남북한이 부단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2)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 : 전자상거래

2000년 이후 북한은 남북한 경제협력과 북한의 7.1조치로 인해 북한 경제의 개방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은 사실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의 개방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며 전자상거래가 북한의 개방을 더욱 가속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임을 주장하고 있다.¹⁹⁾

전자상거래는 전통적인 중간매개 기능을 가상공간으로 대체한다. 또한 새로운 제품과 시장이 신속히 개발되고 기업과 소비자간 긴밀한 관계가 맺어지게 됨으로써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을 변화시킨다. 또한 전자상거래는 지식을 확산시키고 사람들간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수행할 새로운 채널이 형성되며, 유연성과 적응력을 보다 더 요구하는 등 시장에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는 중소기업과 일반 가정간 단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전 세계를 연결함으로써 경제의 지역적인 경계를 철폐시키는 효과를 준다.

전자상거래는 개방을 통해서만 더욱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 전자상거래의 기본 인프라인 인터넷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규모 참여보다는 대규모 참여가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대금지불의 안정성, 개인정보의 보호, 전자상거래 판매업체로의 용이한 접근 등이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전자상거래를 북한이 수용할 경우, 북한이 의도하지 않아도 개방화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전자상거래는 단순히 상거래 통한 비용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 개방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는 북한의 산업구조에 변화를 주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Ⅲ. 남북한 전자상거래 도입관련 법적·제도적 문제점 검토

1. 법적 문제점

1) 남북 전자상거래 추진상의 기본적인 법적 장애

남북한 정보통신(IT) 경제협력에서 국내기업이 북한과 합작 투자하여 북한에서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로서 (주)훈넷은 북한의 장생무역총회사와 합작으로 '조선북권 합영회사'를 설립(2003년 3월), 인터넷 북권사이트를 개설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의 북한주민접촉 사전 승인을 먼저 획득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 전자상거래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장애

19) 북한이 2003년 7월 1일 발표한 경제관리개선조치는 ① 국정가격의 현실화 ② 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③ 기업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④ 북한'원'의 평가절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로 볼 수 있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²⁰⁾에 명시된 교류협력사업승인제도·방북증명서제도·남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원칙적인 승인제도이다.²¹⁾ 이 법제는 남북한간 상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기업 대 정부, 특정 또는 불특정기업간 기업 대 기업, 기업 대 개인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통일부로부터 남북한 주민접촉 사전승인, 방북증명서 등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²²⁾ 이와 같은 현재 법제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개인이나 기업이 상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즉, 전자상거래 당사자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그 상거래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은 현행 실정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 행위에 대해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결국 전자상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남북한 전자상거래 도입을 위해서는 교류협력법의 일부 개정 특히,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제3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남북 교역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규정의 신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²³⁾

2)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상의 계약법적 문제점

남북한 전자상거래 도입에 있어 북한의 법제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 특히, 계약법적 기반이 있어야 하며 현재 남한은 계약법적 체계가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법령에는 계약법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추진에 있어 계약 성립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전자문서와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인정 문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문제, 대화자간 거래인가 격지자간 거래인가에 따른 계약의 성립시기 등으로 구체화된다.²⁴⁾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는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효력에 관한 아무런 법령도 없을 뿐더러 전자계약의 성립과 이행 등에 관한 법률도 없는 실정이다.²⁵⁾

다만, 섭외적 경제거래에 관하여 1995년 2월 22일 제정된 무역·투자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을 규율하는 대외경제계약법이 있다. 이 대외경제계약법의 근본적 토대가 된 법률로 1990년 9월 5일 제정된 북한 민법이 있으며 이 민법은 국가가 수립한 인민경제계약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계약과 그 외의 일반계약으로 구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계약은 개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인민경제

20) 정식 법률 명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다. 이하 ‘교류협력법’이라고 줄여 쓴다.

21) 김재협, “남북한 협력사업 승인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2)』, 법원행정처, 2000, pp.24 ~ 28.

22) 박정원, 「북한의 IT법제와 남북 IT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pp.29 ~ 30.

23) 제성호, “남북 인터넷 교류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문제”, 『KISDI 이슈리포트』, 제3권 제7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7, pp.20 ~ 36.

24) 심상렬, “국제간 전자무역 거래의 법/제도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eBizKorea』,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3. 8, pp.14 ~ 28.

25) 남한은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대외무역법,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 무역거래기반조성법,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인터넷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 등이 제정되어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계획에서 정해진 내용과 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반면, 일반계약은 계약의 대상, 이행 기간, 대가와 같은 내용의 본질적 내용을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²⁶⁾ 이와 같이 북한의 법제에서는 북한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계약법이 있을 뿐 실제 상거래나 전자상거래가 법적으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법적 체계는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남북한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법제가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며 전자서명이 전통적 서명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다.

또한 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한 개념, 전자메세지의 발신과 도달시기, 청약의 구속력에 관한 법적 규정에 관한 검토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도입되도록 남북한 관련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호 협의해야 한다. 한편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우리 민법상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거래관계의 명확화라는 의미에서 승낙의 의미가 도달할 때로 보고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전자거래에서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도달주의의 입장은 세계적 추세이다.²⁷⁾

3) 전자상거래 허용품목에 관한 법적 문제점

전 세계적으로 모든 품목 및 산업에 대해 전자상거래가 이용되고 있지는 않다.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Mckinsey) 조사에 따르면 의류, 도서, 음악 CD, 전자제품, 특산물 등 제한된 품목만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 품목에서도 전자상거래 활동 빈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자상거래가 지닌 본질적 특성으로 판단되지만 남북한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에 있어서도 전자상거래 허용 품목에 대해 다소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국내 법제에서는 전자상거래 허용 물품에 대해 사전 규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전자상거래가 향후 추진되더라도 전자상거래 허용 물품에 대한 사전적 조사가 필요하며 허용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산업자원부장관이 현재 수출입공고를 통해 일부 무역품목을 규제하는 것과 같이 전자상거래 허용 품목에 대한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 허용품목은 계약의 이행측면에서 검토하더라도 심의 필요성이 있다. 즉, 계약의 이행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간에 전자계약이 체결된 후 물건의 배송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남북한 사이의 배송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 소정의 반출, 반입에 해당하여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 대금 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²⁸⁾ 그러나 문제는 반출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전략물자를 반출하는 경우 바세나르 협약에 따라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법도 전략물자의 경우

26) 북한 민법 제138조

27) 제성호, “남북통신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정보통신정책」, 제13권 제7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pp.22 ~ 36.

28)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산업자원부장관, 국방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 다운로드 방식으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재화도 바세나르 협약에 따라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허용품목에 대한 사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결성되었던 COCOM이 1994년에 해체되면서 이를 대체해서 북한, 이라크, 리비아 등 소위 불량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위한 바세나르체제가 등장하였다. 바세나르 협약은 재래식 무기와 기술 및 전략물자의 국가간 거래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궁극적으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방지하며, 기존의 대량 파괴 무기 확산금지체제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남북 특수성·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고려하여 신소재, 전자장비, 통신, 정보보안 등 전략물자 관련 사업을 반출 제한품목으로 대외무역법에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 전자상거래 도입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현실이 반영되어야 한다.²⁹⁾ 그동안 초보적인 반출·입을 중심으로 한 낮은 단계의 협력으로 바세나르 협정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인터넷 수용과 함께 전자상거래가 본격 제기되면서 이 문제는 남북한 전자상거래에 도입에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의 제어계측 기기가 컴퓨터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은 제조업의 대북 진출 확대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컴퓨터를 비롯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역시 상당부분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있다. 공개된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통제대상이 아니지만,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에서는 전자분야에서 내장형 프로그램 제어용 장비관련 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항공 전자분야의 GPS 관련 소프트웨어 등 광범위한 분야를 통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국 남북한 전자상거래 도입은 국내외적 전략물자 반출제도로 인해 전자상거래 허용 품목에 대한 사전 검토가 선결되어야 한다.

2. 제도적 문제점

1) 경제협력 추진의 복잡한 절차

남북한 전자상거래 도입 문제는 결국 남북한 정보통신(IT) 교류를 포함한 경제협력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본질적 속성이 거래 당사자간 정보공유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이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재 남북한간 정보통신(IT)교류를 포함한 경제협력은 서로 상이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먼저 북한은 남한 기업 및 거래 당사자 접촉 장구를 민족경제협력 연합회와 아태 평화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있지만 남한은 기업들이 북한에 대해 개별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분절된 접근방식은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를 추진함에 있어서

29) 바세나르 협약은 현대전자의 남북경협 사업도 좌절시켰다. 1999년 현대전자는 북한의 삼천리 총회사와 150만 달러의 컴퓨터 조립설비의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통일부에 시설 자체 반출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통일부가 바세나르 협정을 이유로 방북을 불허, 무산되고 말았다.

도 여러 위험에 노출된다. 특히 업무 추진속도가 늦어지고 동일한 시행착오를 겪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발생한다. 남북교역이 전자상거래로 근접하기 위해서는 남북 공동 e-마켓플레이스의 형성 등 가상공간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일원화된 접근방식이 요구되지만 현재 협력절차는 남북한간 이원화되고 복잡한 절차를 취하고 있다. 현재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일반 무역거래와는 달리 남북교역은 북한주민접촉, 물품반출 및 반입, 남북한간 운송, 대금결제 등 모든 절차를 직·간접적으로 통일부로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인해 이러한 점도 전자상거래 도입의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2) 북한관련 정보 부족

최근 남한의 무역관련 거래 알선사이트는 수요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인해 엄청난 파급효과를 보고 있다. 이는 일반 상거래와 무역거래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교역에서는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제한되고 한정적인 정보만을 받기 때문에 이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도입에 장애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대북 관련 정보는 통일부를 비롯한 국가기관과 일부 민간 연구소, 대북 관련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지만 미비한 부분이 많으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수한 자금력과 정보망을 갖춘 대기업만이 정확한 대북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특정기업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정보가 국한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 결과 대북 진출 프로세서가 일반적인 무역거래와는 달리 매우 복잡하여 그 사항을 잘 모르는 중소기업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겪고 있다.³⁰⁾

3) 북한의 정보통신(IT)인프라 미비

북한의 정보통신(IT)인프라가 미비한 점은 남북한 전자상거래 도입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먼저, 북한은 현재 통신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과 북한은 통신 인프라에서 현저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IT)이용에 있어 편중현상이 심각하다. 특히 전화통신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때 전화통신망은 우리나라에서 PC통신의 접속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북한에서 국가기관과 당 그리고 군의 전화망은 상대적으로 양호할 뿐더러 전체 시설 가운데 차지하는 수도 많으며 일반 개인 및 주민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 이는 통신 인프라가 처음에 군사용 등 공공망 개념에서부터 발전하였고 정보통신(IT)산업의 경우에도 군사용 통신기술과 통신장비 산업이 민수용보다 훨씬 더 일찍 발달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민간의 참여보다 국가 중심으로 통신망이 구축된 것으로 인해 개별 경제주체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전자상거래를 도입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30) 한국무역협회, 「남북경협 실무 길잡이」, KITA, 1997, pp.11 ~ 24.

둘째, 북한의 통신시설은 그 양적인 면에서도 열악하지만 그 세부적 내용을 분석하면 더욱 심각한 현실에 있다. 즉, 통화 연결이 잘 되는지 통화 중 끊어짐의 현상이 있는지 등의 경우를 제고해 볼 때 통신설비의 효용성과 통화 성공률이 극히 낮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통신 인프라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성형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방도시와 지방도시간에 직접적인 연결 형태가 아니고 평양으로 모아서 다시 분산하는 형식의 중앙 집중식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공공행정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의 행정관리 체계는 중앙집권적인 부문별 관리체계(내각 - 성 - 관리국 - 기업소)를 기축으로 하여, 여기에 지역별 관리체계(중앙 - 도 - 시 - 군)를 결합시킨 구조로 되어 있다. 광섬유 케이블 공사와 컴퓨터 망 역시 이 같은 구조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 인프라 경쟁력 확보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다.³¹⁾ 넷째, 위에서 언급한 남북한 정보통신(IT) 수준의 격차도 문제지만 기술기반을 이루는 표준의 괴리도 전자상거래 도입에 큰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특히 남한과 북한은 컴퓨터 운영체제의 접근방법이 서로 상이하다. 남한은 미국의 글로벌 최첨단 IT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社에서 배포한 윈도우(Window)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북한은 마이크로소프트社(MS)로부터 아직까지 국가 승인을 받지 못한 탓에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의 컴퓨터 운영시스템과는 별개로 리눅스(Linux)라고 하는 운영시스템(OS; Operating System)으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실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컴퓨터 운영시스템을 포함한 기술적 표준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남북한이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구현하고 있어 이는 기술적 문제점으로 판단된다.

IV. 남북한 전자상거래 도입관련 법적·제도적 추진 방안

1. 법적 추진 방안

1) 남한내 법적 정비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앞서 논의된 법적 문제점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한내부에서 남북한 전자상거래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제를 개정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위원회를 통해 지난 1991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의 현행 법제가 남북한 전자상거래를 도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은 남남갈등의 요인으로 쟁점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국회내부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을 위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와 같이 남과 북이 협의해 전자상거래를 추진할

31) 최신립, “북한의 사업기술 : 정보통신산업”, 「KIET 정책자료」, 제83호, 산업연구원, 1999, pp.38 ~ 40.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 추진위원회 구성이후 현행 법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북한이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를 수용한다면 전자상거래의 다양한 장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터넷 수용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의 경우라고 해도 이것이 북한 주민과의 통신과 회합인 경우에는 승인을 사전 받도록 되어 있는 남한의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3항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³²⁾

남북한 전자상거래 도입에 있어 불온 통신에 대한 규제,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보호 등은 일반 국내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등 관련 국내법에 명시된 법제를 중심으로 통제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남한에서 제정되거나 현행법에 나타난 전자상거래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남북한 양 당사자가 전자상거래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단순화시키거나 남북한 전자상거래 관련 제약을 최소화하는 특별법으로 별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법과 제도를 소책자로 정리하여 기존 대북사업체들에게 배포하여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에서 공론화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한편 반출입과 검역에 대한 절차 개선도 필요하다. 남북교류협력법상 반출입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전자상거래의 반출입에 대해서도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³³⁾

2) 북한 법체계의 이해

전자상거래는 법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한 거래형태이다. 북한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기반이 구축되기 이전에 먼저,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대한 합의서, 및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서가 체결되어 있고 또 앞으로 북한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 부분개방 모델을 채택하더라도 실제 북한 법체계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개인의 사적 소유가 금지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법이며 이와 같은 북한의 법이 어떻게 전자상거래와 융화될 수 있을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은 남한의 계약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 원리를 받아들여 상거래 당사자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북한내 전자상거래법 제정 촉구

남북한 전자상거래가 추진되도록 남한에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제정에 대한 촉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먼저 북한에서는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허용 품목의 공고,

32) 성민섭,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 정비방안”, 「남북관계 법제 정비를 위한 토론 마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한변호사협회, 2004. 10, pp.12 ~ 18.

33) 김연철, “바세나르체제와 전략물자 반출제도 개선”, 「남북경협 GUIDE LINE」, 삼성경제연구소, 2001, pp.36 ~ 48.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화, 전자계약의 성립 및 이행,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에 대해 법적 효력 부여 등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기반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한 공동의 전자상거래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며 남한의 국가기관과 관련 당사자들이 북한에 대해 전자상거래 관련법을 제정하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전자상거래법 제정을 위해서 앞으로 관련 이슈를 남북한 경제협력의 주요 의제로 선택되도록 함과 동시에 남북한 관련 전자상거래 법령에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논의도 필요하다.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남북한 경제협력은 단지 단순교역이나 위탁가공 단계를 넘어 직접투자나 합작투자, 자금조달이나 판매확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법적 기반 장치가 마련되고 남북한간 전자상거래 도입으로 자원의 배분구조가 최적화 될 때 국가 전체적 윈윈(Win-Win)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2. 제도적 추진 방안

변변한 기업이 전무한 춘천권역 내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고 공신력이 큰 단체는 지방 자치단체이다. 따라서 이들은 지역 최대의 정보생산기관일 뿐만 아니라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풍부한 콘텐츠 제공도 가능하므로 이들의 웹 사이트의 기능을 강화하여 이를 지역내 대표 포털 사이트화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이다.

1) 남북한 상호협력의 유지

남북교역은 남북한간 상이한 정치·경제적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단일민족이라는 특수성, 부존자원의 활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전자상거래가 남북교역에 적용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즉, 정보통신(IT)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협력 부문이 많지만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를 토대로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할 때 소기의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 남한의 자본 및 상업화 기술과 북한의 이론 및 소프트웨어 우수 인력을 접목시켜 응용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이를 국제시장에 판매하는 경우가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모델을 통해 북한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자상거래를 실현하기 기본 인프라를 면밀히 분석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그 수준을 향상시켜 남북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현재 북한의 산업이 전자상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산업으로 유도하거나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다.³⁴⁾

2) 북한의 정보통신(IT)인프라 확보

남북한 전자상거래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보통신(IT) 인프라가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해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해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북한의 관리들이 남한의 전자상거래 현황을 시찰, 견학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해 전자상거래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도록 통신장비 등 기본적 정보기술(IT) 지원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남한에서 버려지는 컴퓨터나 정보통신(IT) 장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와 한국인터넷협회에서 소규모로 북한에 컴퓨터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남한에서 버려지는 컴퓨터가 연간 40만대 이상으로, 그것도 486-586기종이 주류를 차지 하는 실정이며, 기업체에서도 펜티엄급 미만의 기종은 폐기에 따른 세금 문제 때문에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⁵⁾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남한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를 구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 제도적 기구를 통해 폐컴퓨터를 수집하고 이를 북한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북한에 기술 인프라 시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남한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라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최소한의 유비쿼터스 환경 구비

정보통신(IT) 관련 작금의 기술발전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인터넷의 상용화로 말미암아 E-mail의 보편화와 함께 다양한 관련 서비스들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성장속도가 급팽창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의 발달로 전 세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모든 면에서 '사이버스페이스'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빠르게 통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기존 시장이 갖고 있던 지역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시장, 이른바 '사이버 마켓(cyber market)'을 탄생시킴으로써 단일 경제권으로의 진입을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 마켓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정보혁명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며 북한도 이를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한 컴퓨터 운영체제도 단일의 시스템 이용되도록 기술적 표준의 확립이 필요하다. 남북한 전자상거래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기술적 표준, 서비스 표준, 장비의 표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4) 남북한 협업을 통한 수익모델 제시

경제협력 활동의 주체는 바로 기업이다. 기업의 경영활동은 반드시 수익을 전제로 하고 그 수익을

34) 조동호, "남북경제교류 협력의 평가와 전망", 「통일전략포럼보고서」, 제30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pp.20 ~ 21.

35) 고영삼, "민간부문의 성공적인 남북 IT교류를 위한 정부의 역할 모형 연구", 「2002 통일백서」, 2002, pp.24 ~ 26.

창출하는 터전은 바로 시장으로 볼 수 있다. 즉, 남북한 전자상거래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며 그 가운데 상호수혜원칙에 입각한 시장 창출이 선결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남북이 각각 보유한 핵심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업의 경영활동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완충 개념의 사업구조를 개발하여 이를 시장과 연계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남북한 공동의 협업 모델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야 하며 이 새로운(新) 비즈니스에 수익 모델이 접목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에서 개발한 제품의 국내의 진출과 국제적인 제품출시를 남한이 도와줌으로써 북한이 앞으로 전자상거래에 참여하게끔 우수한 수익모델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남북한 협업을 통한 수익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분야는 소프트웨어 산업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소프트웨어 산업은 글로벌 차원에서 대내적인 변화, 특히 공급과 아웃소싱 산업 차원에서의 개편이 시작되고 있다. 기존 인도 위주의 글로벌 생산기지는 인건비를 기반으로 한 중국, 인건비와 문화적 유사성을 강점으로 한 동구권 유럽 국가 및 러시아가 새로운 아웃소싱 기지화하고 있다. 남북의 소프트웨어 협력방향도 이 같은 글로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실현 가능한 사업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글로벌 경제시스템 하에서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자원동원 및 이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야 한다. 남한의 경우 글로벌 수준의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 양질의 기술력과 애니메이션 개발 위탁을 통하여 입증된 섬세한 작업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강점을 글로벌 기업의 기획, 디자인 역량, 글로벌 표준과 개발방법론, 시장정보만 결합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 될 것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남북경제협력은 여러 제약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IT)관련 경제협력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시기상조일지는 모르나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있다. 또한 북한도 정보통신(IT)을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시대적 요구임을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최근에 북한은 방송과 신문을 통해 컴퓨터와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보도하고 있으며 북한 고위층도 정보산업 특히 정보통신(IT)산업의 성장을 위해 인재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정보통신 부문은 상당히 취약한 실정에 있다. 노후화 된 컴퓨터와 저조한 보급도 북한의 정보화 수준을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북한의 특수 정치체제로 인해 대외개방적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정보통신 산업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지만 정보통신 산업이 북한경제를 회생시킬 정도로 커다란 발전을 이루어내기에는 당분간은 현실적 제약이 많다. 우선 정보통신 산업의 각종 인프

라가 취약하며, 우수한 제품을 개발한다 하여도 이를 소화할 수 있는 내수시장이 부재한 상황이며 전자상거래를 위한 필수조건인 개별 기업의 정보화도 미비한 실태이다. 특히 인터넷은 정치적인 이유로 상당기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경제협력을 하는 것이 북한의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며 남북한이 동시 경제성장을 위한 한 방안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도 먼저 남북한 교역 현황과 IT교류 협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남북한 전자상거래 도입 관련 법리적·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관련 법적 문제점으로 교류협력법상 교류협력사업승인제도·방북증명서제도·남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원칙적인 승인제도가 전자상거래 도입에 제약이 되는 점, 북한에서는 전자문서와 전자적 의사표시 등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령 미비, 온라인을 통하여 다운로드 방식으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재화 즉, 바세나르 협약에 따른 전자물자 반출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도적인 문제점으로는 경제협력 추진의 복잡한 절차, 북한관련 정보 부족, 북한의 정보통신(IT) 인프라 미비, 컴퓨터 운영체제 등의 차이 등을 포함한 기술적 표준의 부재 등을 들 수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전자상거래가 추진되도록 남한내 법·제도적 준비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북한 법체계의 이해, 북한도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도록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열악한 북한의 기술 인프라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도입 선결조건으로 남북한 협업구조를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북한에게 제시하여 북한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한간 현실적인 쟁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또한 남북한간 정치적·정책적 논리가 경제적 논리보다 실제 우선시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논리를 전개하여 그 한계점이 있다.

참 고 문 헌

- 고영삼, “민간부문의 성공적인 남북 IT교류를 위한 정부의 역할 모형 연구”, 「2002 통일백서」, 2002, pp.24 ~ 42.
- 김상택·공영일, “북한의 정보화와 남북 통신통합”, 「인터넷과 북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0.
- 김연철, 「남북경협 GUIDE LINE」, 삼성경제연구소, 2001.
- 김재협, “남북한 협력사업승인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2)」, 법원행정처, 2003.
- 김지연, “폐 컴퓨터의 재활용 현황”, 「폐기물」, 통권 제52호, 1997. 5.
- 남성욱, “인터넷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친(親)북한 인터넷 사이트 현황”, 「북한연구학회보」, 제4권제1호, 북한연구학회, 2000.

- 박정원, 「북한의 IT 법제와 남북 IT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 박찬모, “남북 정보통신(IT)산업 협력의 현황과 과제”, 미래전략연구원, 2002. 8.
- 배성인, “정보화시대 북한의 정보통신 산업과 남북한 교류협력”, 「통일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2001.
- 성민섭,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 정비방안”, 「남북관계 법제정비를 위한 토론 마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한변호사협회, 2004.10.
- 심상렬, “국제간 전자무역 거래의 법/제도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eBizKorea」,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3.8.
- 이태섭, “북한의 정보기술”, 「과학과 사회」, 김영사, 2001.
- 임을출, “북한의 인터넷산업”, 「통일경제」, 통권 제65호, 현대경제연구소, 2000.5.
- 장명봉, “남북교류협력관련 국내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법학논총」 15집, 2003.
- 정창현, “인터넷과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인터넷 시대의 민족통합」, 한림대 민족통합연구소 창립 2주년 기념 연례 학술대회, 2000.11.24.
- 제성호, “남북통신교류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정보통신정책」, 제13권 7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 제성호, “남북 인터넷 교류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문제”, 「KISDI 이슈리포트」 03-0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7.
- 조동호, “남북경협 제도와 방안에 관한 연구”, 「KDI 북한경제리뷰」, 제3권 제3호, 한국개발연구원, 2001.
- 최신림, “북한의 사업기술 : 정보통신산업”, 산업연구원 KIET 정책자료 83호, 1999.
- 한국무역협회, 「남북경협 실무길잡이」, KITA, 1997.